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특 허 명** : 상부의 단절된 구간에 에너지 소산수단이 설치된 철골프레임을 이용한 기존건물의 내진보강방법

- **특 허 번 호** : 특허 제 10-1827200호

○ 발 주 자 **(갑)** : 인천부평소방서 서장 정 병 권

○ 특 허 권 자**(을)** : (주)한국방재기술 대표 안 태 상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 십정119안전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에 한하여 "갑" 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상기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유효하다.

제2조 (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특허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술사용료 등)

① "해당사항 없음"

제4조 (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

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을"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율을 법적 하도급율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준공정산)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특허공법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8년 02월 14일

"갑" (발 주 자) : 인천부평소방서 서 장 정 병 권 (인)

"을" (특허권자) : (주)한국방재기술 대 표 안 태 상 (인)